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1. 살처분한 가축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 고
젖소	유사산 태아	초유떼기가격(생후 1주령) 암·수평균가격×유사산발생당시 임신개월수/10.25개월]	암·수가 구분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한우 수정란이식 시 증명서 등 확인될 경우 한우 태아가격 적용
	초유떼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분유떼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한우 수정란 이식 시 한우 태아가격 적용
	초임단계(임신3~8개월까지)	수정단계 가격과 초임만삭 가격을 기준으로 임신개월에 따라 산정	
	초임만삭(임신9개월 이상)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초산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2산우	초산우가격	
	3산우	초산우가격의 95%	
	4산우	농협조사 가격 기준	
	노산우(5산 이상)	(노폐우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 [(4산우 가격-노폐우가격)÷2]	
초산우이상 임신우	(산차별 젖소개체 평가액)+ 태아가격 [초유떼기(생후 1주령) 암·수평균가격 : 농협조사 산지가격×살처분 당시 임신개월수÷10.25개월]		
고능력우	일반 젖소가격(농협조사 가격 기준)+ [(평균초과산유량)×(농가별유대-생산비)]×이용잔여년수의 1/2	가격산정기준 및 방법은 비고 5.에 의함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고능력우	일반 젖소가격(농협조사 가격 기준)+ 평균 초과산유량×(농가별유대-생산비)×이용잔여년수×조정계수(0.99)]	상 동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젖소의 우유생산가치	[사육농가별 일(日) 평균 유대손실분×입식제한기간×조정계수(0.99)]	상 동	
젖소 종축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젖소 종축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농식품부와 협의 후 결정하되 고능력우 보상을 받는 개체는 제외 [협의된 상한가격×이용잔여년수(월)/평균도태월령] -이용잔여년수(월) 및 평균도태월령은 고능력우 산정기준을 준용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소 종축에 한함
육우	유사산 태아	젖소에 준하여 지급	
	초유떼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분유떼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비거세우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 동향중 육우 비거세우의 평균농가 수취 가격 기준(600kg비거세우의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거세우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 동향 중 육우 거세우의 평균농가 수취 가격 기준(600kg거세우의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육우 임신우	체중kg×육우 암소의 kg당 가격+젓소 초유떼기가격×살처분 당시 개월수/10.25개월)	
	육우 암소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 동향 중 육우 암소의 평균농가 수취 가격 기준(600kg암소의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한우	유사산 태아	송아지 4~5개월령의 암·수 평균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유사산 발생 당시 임신 개월수÷14.5개월	암·수가 구분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송아지(3개월이하)	(송아지 월령 + 10개월(임신기간))÷14.5개월×송아지 4~5개월 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	암·수 구분
	송아지(4~5개월)	농협조사 산지가격	암·수 구분
	송아지(6~7개월)	농협조사 산지가격	암·수 구분
	6~7개월초과 ~ 600kg이하	농협조사 산지가격(송아지 6~7개월) + [(당해 가축의 체중kg-송아지 표준 발육체중kg)×kg당 가격]	암·수, 거세우·비거세우 구분
	600kg초과	농협조사가격(600kg) + [(당해 가축의 체중kg-600kg) ×kg당 가격]	암·수, 거세우·비거세우 구분
	임신우	(체중구분별 한우 암소가격)+(송아지 4~5개월령의 암·수 평균가격 : 농협조사 산지가격×살처분당시 임신개월수÷14.5개월)	태아가격은 개복확인 또는 임신진단서가 있는 경우 100%, 인공수정 증명서만 있는 경우 70%
	월령에 따른 평가액 상한선 조정	-60개월령까지는 평가상한가격의 100% 적용 -61~119개월령은 매1개월 증가시마다 평가상한가격의 1%씩 감액 적용 -120개월령 이상은 평가상한가격의 40% 적용	중축(고등등록우) 제외
	60개월령 초과 한우 중축 (고등등록우)	체중 × kg당 가격	한국중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중축(고등등록우)에 한함
한우 중축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한우 중축	한국중축개량협회에서 농식품부와 협의 후 결정	한국중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소 중축에 한함
돼지	유사산 태아	포유자돈가격×유사산 발생당시 임신 개월수÷3.8개월×평균이유두수	혈청검사 등으로 충격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
	포유(4주이내)	자돈생산원가(비육돈 마리당 사육비 중 가축비)+ 포유자돈 사육비(1일당 생산비[(비육돈 마리당 사육비-가축비)/180일]×14일)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 중 비육돈 마리당 사육비 적용
	이유(4-8주)	포유자돈가격 + [(자돈가격 - 포유가	

	<p>자돈(9-10주)</p> <p>육성돈(31kg초과 ~ 60kg이하) · 비육돈(61kg초과)</p> <p>구제역·ASF 발생으로 살처분 하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모돈</p> <p>돼지오제스키병 항체양성 모돈· 옹돈</p> <p>구제역·ASF 발생으로 살처분 하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종돈</p> <p>인공수정 센터(AI센터) 종모돈(♀)</p>	<p>격)÷2]</p> <p>해당 살처분 농가의 최근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첨부) 또는 시·군이 해당 지역 또는 인접지역에서 조사한 거래 시세, 다만, 최근거래내역 또는 인접 지역 거래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양돈경영지표(대한한돈협회 조사)를 적용</p> <p>자돈가격(30kg기준)+(당해체중-30kg)× [110kg당 비육돈 농가수취가격-자돈가격(30kg기준)]/80</p> <p>-후보돈 외부구입시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후보돈 구입비+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구입 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p> <p>-후보돈 자체생산시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육성 후보돈 시가+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선정 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p> <p>· 임신태아 가격 : 자돈 생산비(가축비)×평균이유두수×평균 임신기간율(50%)</p> <p>250,000원</p> <p>(사)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사)대한한돈협회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종돈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p> <p>후보종모돈 구입비+ 종모돈 선발을 위한 추가 손실비+ 후보돈 구입 시부터 정액채취 전 사육비-감가상각비+ 정액잔존 가치</p>	<p>포유, 이유, 자돈의 두수는 4:4:2의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가 입증하는 경우 별도 인정</p> <p>* 110kg 비육돈 농가수취가격 :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 중 탕박돈 평균 가격기준(농가 수취가격)</p> <p>가격산정 기준 및 방법은 비교 4.에 의함</p> <p>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종돈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종돈으로 인정한 것</p>
개	어린 개	시가평가액	거래영수증 등 확인 사육일지 또는 임신감정 등을 통해 임신 확인
	성견	<p>시가평가액(최고한도는 10만원)</p> <p>-임신태아 가격 : 젓먹이 강아지 가격의 1/2를 평균산자수에 일률 적용</p>	
닭	병아리	<p>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숙보 산지가격(산란용·육용) 기준 단, 원종계는 수입 면장 또는 세금계산서 기준, 산란용 종계는 농장별 종계 병아리 구입시 구입처의 세금계산서 기준, 토종닭 종계는 농장별 종계 병아리 구입시 구입처의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하되, 면세법인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도 인정</p>	<p>종계(산란용·육용·토종닭) · 실용계(산란용·육용·토종닭)를 구분하여 평가</p>
	산란용 원종계·종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생추~27주령 미만 - 27주령 - 27주령이상~78주령미만 - 78주령이상 	<p>초생추 상한가격과 27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p> <p>생산비+ 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221개×병아리가격의1/4×10%]</p> <p>27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p> <p>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종계 노계) 기준</p>	
<p>육용 원종계·종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생추~31주령미만 - 31주령 - 31주령이상~70주령미만 - 70주령이상 	<p>초생추 상한가격과 3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p> <p>생산비+ 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148개×병아리 가격의 1/2× 10%]</p> <p>31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p> <p>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종계 노계) 기준</p>	
<p>토종닭 종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생추~25주령미만 - 25주령 - 25주령이상~80주령미만 - 80주령이상 	<p>초생추 상한가격과 25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p> <p>생산비+ 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188개×병아리 가격의1/2×10%]</p> <p>21주령 상한가격과 8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p> <p>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종계 노계) 기준</p>	
<p>육용 실용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단계 - 출하단계 (평균출하일령 이후) 	<p>병아리가격+ [(산지가격×출하체중)- 병아리가격]/평균출하일령]×당해개체일령</p> <p>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p> <p>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p>	
<p>토종닭 실용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단계 - 출하단계 (평균출하일령 이후) 	<p>병아리가격+ [(산지가격×출하체중)-병아리가격]/평균출하일령]×당해개체일령</p> <p>※ (사)한국토종닭협회 발표 산지가격 기준</p> <p>(사)한국토종닭협회 발표 산지가격 기준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p>	<p>단, 병아리를 감별해서 입추한 경우 종계장에서 발행한 계산서를 반영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음</p>
	<p>산란용 실용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8주령까지 사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아리~10주령미만 · 10주령 · 10주령 이상~21주령미만 · 21주령 · 21주령~78주령미만 · 78주령이상 	<p>병아리 상한가격과 10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p> <p>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 가격 기준(육성추 가격을 기준)</p> <p>10주령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p> <p>생산비+ 잔존가치(계란 판매개수 290개×계란 평균가격(양계속보 산지가격)×10%)</p> <p>21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산란노계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p> <p>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중 산란노계 가격</p>	<p>"브랜드란"은 상표등록된 알(납품받는 사업자가 상표등록한 경우 포함)을 말하며, 그 생산담은 계약서 및 최근 거래기록에 기초하여 브랜드란 납품가격과 일반란 시세와의 차액 비율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산란용 종계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p> <p>다만, 농장별 잔존가치를 입증 시 반영 [계란 판매개수 {346개(47~52주까지 수당 알 생산개수)×최근 1년간 출하사육계군의 평균 산란율 (산란일지 및 계란 판매 세금계산서)×계란 평균가격(양계속보 산지가격)×10%}]</p>
	종란	<p>병아리 가격의 1/2</p> <p>-부화중인 종란의 경우 입란후 7일 이내는 병아리가격의 2/3 및 그 이후의 종란은 병아리 가격</p>	
	종란을 제외한 알	<p>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 가격 기준</p>	<p>"브랜드란(전자상거래 포함)"은 계약서 및 최근 거래기록에 의한 납품가격 인정</p>
오리	<p>원종오리·종오리(P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아리 - 오리병아리~28주령 미만 - 28주령 - 28주령 이상~78주령 미만 - 78주령 이상 	<p>원종오리는 수입면장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격, 종오리는 최근 거래기록(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격</p> <p>종오리 병아리 가격과 28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p> <p>생산비+ 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245개×병아리가격의1/2×10%)</p> <p>28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주령 단위로 산정</p> <p>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 기준</p>	<p>종오리의 경우 20주령 이내에 한하여 계통보증서 인정</p>

	<p>육용오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아리 - 병아리~41일령 - 42일령 - 43일령이후 	<p>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발표가격 기준</p> <p>병아리 가격과 42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일령단위로 산정</p> <p>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발표가격 기준</p> <p>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발표가격 기준 [(kg당 단가×일령)+마리당 당일 사료 가격(농가의 사료구입 단가 적용)]</p>	<p>「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가 있는 기능성 육용오리(무항생제 오리 등)는 최근 거래기록(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격 인정.</p> <p>특수형태(약용) 유향오리(알 포함)의 경우 최근 거래기록(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격 인정</p>
	<p>종란</p>	<p>병아리 가격의 1/2</p> <p>-부화중인 종란의 경우 입란 후 7일 이내는 병아리가격의 2/3 및 그 이후의 종란은 병아리 가격</p>	
	<p>종란을 제외한 알</p>	<p>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 산지가격 기준</p>	
<p>메추리</p>	<p>종축용 메추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아리 - 병아리~10주령미만 - 10주령 - 10주령이상~24주령미만 - 24주령이상 	<p>일반병아리의 125%</p> <p>병아리가격과 10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p> <p>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98개×병아리 가격의 1/2 ×10%]</p> <p>10주령 상한가격과 24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p> <p>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p>	
	<p>실용메추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아리 - 메추리병아리~7주령미 	<p>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p> <p>병아리가격과 7주령 상한가격을 기준</p>	

	만 - 7주령	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생산비+ 잔존가치[알판매개수 260개 ×농장별 판매 수취가격(거래처의 세 급계산서 또는 거래 영수증) ×10%]	
	- 7주령이상~62주령미만 - 62주령 이상	7주령 상한가격과 62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알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사슴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사)한국사슴협회 조사가격 기준	
	녹용	(사)한국사슴협회 조사 전년도 평균 도매가격	
기타 가축	산양·면양·노새·당나귀· 토끼·거위·칠면조 등	살처분한 날 이전의 최근 거래가격 (거래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 기준	

※ 가격 적용기준 및 두수·체중 적용방법

<가격 적용기준>

- 육용오리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
에는 한국오리협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 www.koreaduck.org)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일 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소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http://livestock.nonghyup.com>) 하는
축산물가격정보의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이 조사·
게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일의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당일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
특별시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
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보상금

평가반의 평가 시 살처분 실시 당일의 시·도별 가축 거래두수가 1두 이하로 당일 가축의 시세를 대표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돼지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http://livestock.nonghyup.com>)하는 일별가격동향(도매시장 지육 경매가격) 중 살처분 실시 당일의 탕박돈 전국 평균가격 기준으로 하고,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닭(계란)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양계속보(대한양계협회 발행 주보) 최신호를 기준으로 한다.
- 토종닭 : (사)한국토종닭협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 www.knca.kr)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일 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사슴 : (사)한국사슴협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 www.koreadeer.or.kr)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일 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유기인증 및 동물복지인증가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농산물 인증 및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은 생산된 축산물의 최근 거래가격(세금계산서)과 일반 축산물의 시세를 감안하여 평가하되 일반 가축의 평가액 상한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생산물에 대해서는 계약서 또는 거래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두수 및 체중적용 방법>

- 소 : 실측한 두수 및 체중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역상 긴급한 살처분이 필요하여 전부 또는 일부 개체의 체중을 실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일부 개체의 체중을 실측하지 못했을 경우 : 실측한 개체의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체중을 감안하여 적용
2. 전 개체의 체중 실측을 못했을 경우 : 직전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산정시 적용했던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체중을 적용하고 직전 보상금 평가자료가 없을 경우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이 제시하는 월령별 한우 표준체중(암소 : 번식우, 미경산비육우, 경산비육우, 수소 : 비거세우, 거세비육우)를 적용

- 돼지 : 실측한 두수 및 체중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살처분 두수가 많거나 또는 방역상 긴급한 살처분이 필요하여 실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대한한돈협회에서 제공하는 해당농가의 MSY를 적용한 돼지사육두수 및 구성비와 사료급여실적, 출하실적 등을 적용하여 두수 및 체중 산정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 입식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할 경우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비고 1. 돼지오제스키병 또는 돼지열병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종·모돈·응돈 : 비육돈의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비고 2. 종계·산란실용계·종오리·메추리의 단계별 가격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비고 3. 종계·종오리·종축용 메추리 및 종란기준

가. 종 계 : 축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닭(닭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계 검정확인서나 종계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한 닭,

다만 계통보증서의 경우 20주령이내에 한하여 인정)

나. 종오리 : 축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리(오리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확인서나 종오리육종회사 또는 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한 오리, 다만 계통보증서의 경우 20주령이내에 한하여 인정)

다. 종축용 메추리 : 번식용 메추리(농가에서 번식용으로 사육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 한함)

라. 종 란 : 종계 또는 종오리·종축용 메추리에서 생산된 알(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원종오리장 등에서 생산한 씨알에 한함)

비고 4. 모든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후보돈 구입비

- 살처분 당시 후보돈 시가(순종돈 등 사실확인시 당해가격 인정)
- 후보돈 구입은 종돈장 발급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

나. 모든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

- 모든 선발을 위한 후보돈 구입두수의 20% 인정
- [(후보돈 가격+종부전까지 사육비) - 모든 도태가격]×20%

다. 육성 후보돈 시가 : 육성돈 출하시가

라. 종부전까지 사육비

- (후보돈 외부구입시) 번식돈 사육비÷365×후보돈 구입 시부터 종부 전까지 사육기간(100일)
- (후보돈 자체생산시) 번식돈 사육비÷365×후보돈 선정 시부터 종부 전까지 사육기간(5.5개월)

※ 후보돈 자체생산시 종부전 사육비는 순종혈통증명서와 번식용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번식돈 사육비는 통계청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번식돈 두당 사육현황 자본평가액을 이용

마. 평균 감가상각비(모든 사용에 따른 가치 소모액)

- 감가상각비와 농가보유 모돈의 평균 사용년수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모돈 평균 사용년수(1.5년)
- 감가상각비 = (중부전 후보돈 평가액-노폐돈 가격)÷모돈 내용년수(3년)
- 노폐돈 가격 : 살처분 당시 노폐돈 시가 적용

바. 평균 임신기간율 : 평균 임신기간(114일)의 중간(57일) 상태인 것을 적용

사. 자돈 생산비 : 통계청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자돈 생산비(가축비) 적용

아. 평균 이유두수 : 10두 적용

비고 5. 젖소의 보상가격 산정기준 및 방법

가. 분유떼기~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 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가격과 분유떼기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 단위로 산정 다만, 분유떼기 월령은 2개월, 수정 단계는 14개월을 표준 월령으로 하여 가격 산정

나. 고능력우

- 인정기준: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하고 농협젖소개량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유우군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젖소로서, 최근 3개월의 검정성적 중 높은 성적이 전년도 305일(착유일) 검정성적 상위 50%의 평균 이상인 젖소
- 평균 초과산유량: 해당 개체의 전년도 1년간 총 산유량에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젖소 두당 연간 평균 산유량을 뺀 유량
- 농가별 유대: 평가대상 젖소사육 농장의 최근 1년간 평균 ℓ당 유대(집유업체 증명)
- 생산비 :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유(ℓ당) 평균 생산비
- 이용잔여년수 : 전년도 유우군 검정사업 참여우 도태자료의 유량수준 상위 50%의 평균도태월령에서 살처분 당시의 월령을 공제하되 농가단위 유대 손실분을 보상받는 경우는 입식제한기간을 추가 공제
- 조정계수: 0.99(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입식제한기간 만료일까지의 이자 발생분)

- 평가방법: 고능력우에 대한 보상금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해당 개체에 대한 등록여부를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확인한 후 보상금액을 농협젓소개량 사업소에 의뢰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다.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젓소의 우유생산가치

- 사육농가별 일(日) 평균 유대손실분: [해당 젓소 사육농장에서 원유를 집유한 유업체가 증명한 평가대상 젓소사육 농장의 최근 1년간 일 평균 납유량(l) \times [(평가대상 젓소사육 농장의 최근 1년간 평균 l 당 유대(집유업체 증명) -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유(l 당) 평균 생산비)]]
- 입식제한기간 : 실제 입식제한 기간에서 준비기간을 가산하여 180일
- 조정계수: 0.99(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입식제한기간만료일까지의 이자 발생분)
- 지급기준: 젓소 사육 농가가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신 유대손실분 보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고 6. 한우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6~7개월초과 ~ 600kg이하

- 송아지 표준 발육체중kg :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조사하는 한우 송아지 7개월령의 중간 표준발육체중 적용
- kg당 가격=(600kg 산지가격* - 송아지 6~7개월 산지가격) \div (600kg-송아지 표준 발육체중kg)

* 거세우는 600kg 평균농가수취가격 적용

나. 600kg 초과

- kg당 가격=600kg 산지가격* \div 600kg
- * 거세우는 600kg 평균농가수취가격 적용

다. 60개월령 초과 한우 종축(고등등록우)

- kg당 가격 = 한우암소 2등급 전국평균 경락가격 \times 한우 평균 지육율(59.7%)

비고 7. 인공수정센터(AI센터)종모돈(♂)보상금 상한가격 산정기준 및 방법

가. 후보종모돈 구입가격

- 살처분 당시 후보돈 시가(순종돈 등 사실확인 시 당해가격 인정)
- 후보돈 구입은 종돈장 발급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

나. 후보돈 구입 시부터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비

-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기간 × 후보돈 일당 사육비
- *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기간 : 365일-후보돈 구입 시 일령
- * 후보돈 일당사육비 : 번식돈 사육비의 170% ÷ 365일
- * 번식돈 사육비 : 통계청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 중 번식돈 사육비 적용

다. 종모돈 선발을 위한 추가 손실비

- (후보종모돈 구입가격 +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비 - 종모돈 도태가격) × 12%
÷ (정액채취전 사육기간/180일)
- * 후보돈 구입두수의 12%(추가사육기간 180일 기준) 인정

라. 감가상각비

- (정액채취 전 후보돈 평가액-종모돈 도태가격)/종모돈 내용년수×사용년수
- * 정액채취 전 후보돈 평가액 : 후보종모돈구입가격 +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비
+ 종모돈 선발을 위한 추가손실비
- * 종모돈 도태가격 : 살처분 당시 노폐돈 가격 적용
- * 종모돈 내용년수 : 1.5년
- * 사용년수 : (살처분 당시 일령-365일) ÷ 365일. (단, 사용년수 ≥ 0)

마. 정액잔존가치

- 정액잔존가치 = 연간 생산량 × 이용잔여년수 × 판매가 × 10%
- * 연간 생산량 : 1000두
- * 판매이윤 : 판매가의 10%

* 이용잔여년수 : $(2.5년 \times 365일 - \text{살처분 당시 일령}) \div 365일$ (단, 이용잔여
 사용년수 ≤ 1.5)

비고 8. 산란용 실용가금(닭·메추리)의 경우 사육규모별로 지급한다.

구분	사육규모1	사육규모2	사육규모3
산란용 실용계	12만수 미만	12만수 이상~48만수 미만	48만수 이상
실용 메추리	30만수 미만	30만수 이상	-

2.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또는 생산물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평가반에서 처분당시의 시세를 감안하여 상한가격을 정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자목 괄호 내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3. 구제역·AI·ASF 발생시 가격 적용

- 구제역·AI·ASF 발생 기간(최초 발생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에 관련 가축(소·돼지·닭·오리) 및 생산물(우유·알)에 대하여는 해당 가축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전월 평균시세가 전년도 동월 평균 시세와 비교하여 $\pm 15\%$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월의 직전 3개월 평균 시세로 한다.
-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 등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 또는 살처분한 날의 전월 평균시세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4. 브루셀라병의 최초 신고 인증

- 해당 시·군·구에서 브루셀라병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최초 신고로 인정한다.